

#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기본약관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이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및 요금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 약관의 인가 등 )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정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이 약관과 케이티가 제공하는 각종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이용약관(이하 “서비스별약관”이라 합니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서비스 : 전기통신설비 (이하 “설비”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 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2. 서비스이용계약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케이티와 체결하는 계약 (이하 “계약”이라 합니다)
3. 서비스이용계약자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케이티와 계약을 체결한 자 (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4. 서비스이용권 : 계약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이하 “이용권”이라 합니다)
5. 업무취급국 : 서비스에 관한 영업업무를 취급하는 케이티의 하부조직 또는 케이티로부터 영업업무를 위탁 받아 취급하는 자
6. 전기통신회선 : 전기통신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전송구간의 계통적 통신망 (이하 “회선”이라 합니다)
7. 교환국 :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접속하여 회선 상호간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시설을 갖춘

케이티의 하부 조직

8. 가입구역

가. 일반가입구역 : 케이티가 청약에 대하여 승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지역

나. 조건부가입구역 :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물자 또는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승낙할 수 있는 지역

9. 수용구역 : 동일 가입구역 안에 2 이상의 교환국이 있는 경우 교환국 별로계약자를 수용하는 범위를 지정한 구역

10. 단말기기 : 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

11. 이용번호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케이티가 부여하거나 계약자가 지정한번호의 총칭

12. 분계점 : 케이티 설비와 이용자설비의 경계점

13. 별정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령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는자(이하 별도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동등합니다.)

14. 상호계약자 : 전화청약 시 케이티와 계약에 의해

법인(단체)명의,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전화가입을 한 자

15.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계약자가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6. 불법 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 4 조( 적용범위 )

① 이 약관은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서비스 별 약관과 함께 적용합니다.

② 서비스 별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이 약관과 다르거나 또는 서비스별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령, 전기통신사업법령 기타 국제협약 등을 적용합니다.

## 제 2 장 계 약

### 제 1 절 통 칙

제 5 조 ( 계약체결 단위 ) 계약은 서비스 별 약관에서 정하는 회선, 계약자번호 등 서비스 단위당 1 인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 6 조 ( 가입구역 등 )

① 케이티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통화권을 가입구역으로 운영하며, 가입구역내 수용구역을 지정하여 운영 합니다.

② 케이티는 가입구역 또는 수용구역의 변경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계약자가 다른 가입구역 또는 수용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편입후의 구역에 그 계약자를 수용합니다.

### 제 2 절 청약 및 승낙

### 제 7 조 ( 청약 )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케이티에 청약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별정통신사업자가 가입자 모집 등 케이티의 영업행위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케이티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별정통신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별정통신이용약관
3. 별정통신사업계획서
4. 기타 케이티가 요구하는 관련서류

③ 별정통신사업자가 케이티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청구할 요금채권을 인수하여 재과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도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 요금청구 및 수납방법에 관한 계획서
2. 관련 전산기종 및 시스템 설명서
3. 별정통신사업계획서
4. 기타 케이티가 요구하는 관련서류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청약 및 계약체결 요청은 승낙이전에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제 8 조 ( 승낙 )

- ① 케이티는 청약이 서비스 별 약관에서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낙합니다.
- ② 케이티는 청약이 조건부가입구역인 경우 청약자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케이티는 교환국의 신설 또는 가입구역의 급지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되는 급지에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청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④ 케이티는 제 7 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 의한 계약체결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승낙합니다.

1. 가입자 모집 대상범위 및 재과금 대상 범위는 케이티가 별도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적용. 다만, 별정통신사업자가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한함
2. 업무위탁수수료율은 각 서비스 별 지급율의 가중평균치가 11%이내인  
범위에서 케이티가 별도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적용
3. 케이티로부터 취득한 기술, 계약자, 영업에 관한 정보 및 통신내역 등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외부 유출하는 행위 금지
4. 기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계약조건

#### 제 9 조 ( 승낙유보 )

① 케이티는 제 7 조 제 1 항에 의한 청약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청약자에게 통지합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제 3 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2. 설치장소가 위법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케이티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경우
4.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경우
5.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 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 공공기록정보중  
체납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단, 시내전화,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소정의 보증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7.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17 조,

동법 시행령 2 조 1 항 3 호, 동법 시행규칙 2 조 2 항에 의거 요금 등을  
체납하여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8. 스팸 또는 불법스팸관련하여 “제 35 조의⑤”에 의하여 케이티로부터  
“계약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상실 이후 1 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② 케이티는 제 7 조 제 3 항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자의 계약체결 요청이 제 8 조  
제 4 항의 승낙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하고 그 사유를 별정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케이티는 전항의 승낙유보사항이 해소되는 경우 청약을 승낙합니다.

#### 제 10 조 ( 이용번호의 지정 )

① 케이티는 청약을 승낙하는 경우 서비스이용번호를 청약순서에 따라  
부여하거나 또는 서비스 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별 약관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번호를 부여합니다.

② 케이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항에 관계없이 이용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복수계약에 대한 연속번호 부여
2. 통신 량 안배를 위한 번호 부여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기관 등에서 민원접수 또는 안내 등을  
위한 번호부여

### 제 3 절 개 통

#### 제 11 조 ( 단말기기의 설치 )

- ① 계약자는 서비스의 개통예정일까지 구내통신선로 설비 및 단말기기를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② 단말기기는 계약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사업소 또는 케이티가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③ 제 1 항에 불구하고 서비스 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케이티가 제공 또는 대여하는 단말기기는 케이티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 ④ 단말기기는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을 확보하여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제 12 조 ( 서비스의 개통 )

- ① 케이티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 ② 케이티는 서비스 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공사가 끝나고 계약자와 협의하여 개통일전에 확인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케이티는 전항의 개통확인시험이 끝나고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이용 개시한 날을 개통일로 합니다.

#### 제 13 조 ( 개통일의 연기 )

- ① 계약자는 서비스의 개통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개통일전까지 케이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케이티의 사정으로 서비스가 지연 개통된 경우 케이티는 개통 후 계약자가 최초 납입할 요금 중에서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정액요금을 배상합니다. 다만, 서비스 별 약관에서 별도 정하는 경우는 해당 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

③ 케이티는 개통예정일로부터 3월 이상 경과하도록 개통지연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이용 휴지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 제 1 절 통 칙

1. 기본서비스 : 서비스 별 약관에서 정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주된 기능의 서비스
2. 부가서비스 : 전호의 기본서비스 외에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제 15 조 ( 이용기간의 구분 )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이용기간에 따른 분류

- 가. 단기이용 : 계약기간을 1월 미만으로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 나. 장기이용 : 계약기간을 1월 이상으로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 2. 이용시점에 따른 분류

- 가. 수시이용: 계약자가 이용시점을 사전에 지정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 나. 정시이용: 계약자가 이용시점을 사전에 지정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제 16 조 ( 계약당사자의 의무 )

① 케이티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의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4. 전기통신 관련 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5. 케이티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시행합니다.

가.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시

나.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 운영

※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 100 번

다. 케이티는 계약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첨부,신고

② 계약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케이티가 제공한 설비를 승인 없이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설비 등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3. 전호의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보충, 수리 및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서비스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 계약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가. 서비스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시 지체없이 케이티에 통보 및 갱신

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 임대불가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의무사항 및 이용약관 준수

라.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부담

## 제 2 절 서비스의 이용

### 제 17 조 ( 서비스의 이용 )

- ① 계약자는 서비스 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케이티가 제공하는 2 이상의 서비스를 서로 연결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케이티에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 18 조 ( 단말기기의 접속이용 )

- ① 계약자는 해당 서비스에 적합한 통신방식의 단말기기를 접속 이용하여야 합니다.
- ② 다른 통신방식의 단말기기를 접속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송품질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 19 조 ( 타인사용의 금지 )

계약자는 전기통신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케이티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 이용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 20 조 ( 이용번호의 안내 )

- ① 케이티는 서비스 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가 청구한 번호정보(성명 또는 상호, 전화번호, 주소)를 114 번호안내,전화번호부, 인터넷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 ② 케이티는 계약자가 이용번호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 ③ 케이티는 제 1 항의 서비스에 대하여 전화번호부를 책자형태로 인쇄하거나 전자적 형태(CD-ROM)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적 형태(CD-ROM)의 전화번호부는 상호편에 한하여 발행합니다.

## 제 20 조의 2 (번호안내업무 등 위탁)

케이티는 케이티가 지정하는 자(번호안내 업무를 위탁 받은 자 포함)와 업무협정 등을 체결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
2. 번호정보 제공 및 판매
3. 전화번호부(책자,CD-ROM)발행 및 판매
4. 인터넷에 의한 번호안내서비스

#### 제 20 조의 3 (상호명계약자의 번호정보 제공)

- ① 케이티 또는 케이티가 지정하는자(번호안내업무를 위탁 받은 자 포함)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번호정보를 제 3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상호계약자 번호정보는 전화번호, 상호명, 설치장소(보조주소 제외)에 한합니다.
- ③ 제 1 항 규정에 따라 상호계약자가 자신의 번호정보에 대한 제 3 자 제공에 동의한 후 자신의 번호정보 제공 중단을 원하는 경우 케이티 또는 케이티가 지정하는 자에게 별도의 소정양식에 의해 서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계약자가 제공중단을 요청한 경우 케이티 또는 케이티가 지정하는 자가 접수 처리한 시점 이후에는 당해 상호계약자의 번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 21 조 ( 계약사항의 열람·증명 )

계약자와 계약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사항의 열람 또는 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 22 조 ( 통신 일시 및 번호 등의 열람·복사 )

- ① 계약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당해 서비스에서 발신한 통신 일시 및 번호 등의 열람·복사를 케이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케이티는 전항의 청구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또는 6 월이 경과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외에는 이에 응합니다.

## 제 3 절 서비스의 이용정지 등

### 제 23 조 ( 이용정지 )

- ① 케이티는 계약자가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케이티는 계약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계약자에게 이용정지 7 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케이티는 전항의 이용정지 통지에 대하여 계약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정지를 보류하고 7 일 이내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 ④ 케이티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 관련하여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 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4.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등
- ⑤ 계약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 관련하여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 개월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케이티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제 24 조 ( 이용휴지 )

- ① 케이티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합니다.
- ② 케이티는 전항에 의하여 이용을 휴지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 25 조 ( 이용제한 )

- ① 국가비상사태, 불온통신 단속 등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 케이티는 전항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계약자에게 7 일전까지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 4 장 유지보수 등

### 제 26 조 ( 유지보수 )

- ① 계약자가 설치한 설비의 유지보수는 계약자가 하여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서비스 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유지보수를 케이티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제 27 조 ( 이용실태확인 )

- ① 케이티는 계약자의 구내에 설치한 케이티 설비의 이상으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의 이용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그 설비의 이용실태를 확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전항에 의하여 이용실태를 확인하려는 관계직원은 계약자에게 증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③ 제 1 항의 확인결과 케이티의 설비에 다른 선조기기 또는 불법단말기 등을 연결하여 전기통신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이를 철거한 후 증거보전을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수령한 후 계약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 5 장 계약의 변경

### 제 1 절 장소 및 번호변경

### 제 28 조 ( 설치장소의 이전 등 )

① 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단말기기의 설치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케이티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구내이전 : 같은 구내에서의 이전
2. 구외이전 : 동일 수용구역 내에서의 이전
3. 타지역 전출 : 수용구역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② 계약자가 이전하려는 설치장소가 조건부가입구역인 경우 설치공사에 필요한 물자 또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케이티는 제 1 항의 이전청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자가 체납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설치장소가 위법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곤란한 경우

④ 계약자는 설치장소의 이전 없이 지번이 변경된 경우 케이티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 29 조 ( 이용번호의 변경 )

① 케이티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번호변경 요청에 응합니다. 이 경우 번호변경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신규가입에 의한 번호 이용 시 불편 사항으로 인하여 번호 사용 후 3 월 이내에 번호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번호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케이티는 가입구역 또는 수용구역의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자의 이용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예정일 2 월전까지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변경 후 2 월 이상 변경된 이용번호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④ 전항에 불구하고 계약자의 사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케이티에 2 주일간 게시함으로써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 제 2 절 이용권의 승계·개명

### 제 30 조 ( 이용권의 양도 )

이용권은 서비스 별 약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제 31 조 ( 이용권의 승계 )

- ① 이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케이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케이티는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전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③ 이용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제 1 항의 신청이 있는 때로부터 승계인에게 이전됩니다.

### 제 32 조 ( 개명·개칭 )

계약자는 개명·개칭에 의하여 명의가 변경된 경우 케이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 3 절 일시 이용중단

#### 제 33 조 ( 일시 이용중단 )

- ① 계약자는 케이티에 청구하여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 이용중단 신청일 현재까지의 체납 또는 미정산 요금은 체납요금의 징수 절차에 따릅니다
- ② 전항에 의한 이용중단기간은 1 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일시 이용중단 기간이 초과된 경우는 자동 휴지 처리합니다.
- ③ 일시 이용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자는 번호유지 관리에 따른 일정 비율의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제 34 조 ( 설비의 전용 )

케이티는 서비스 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가 케이티의 설비를 일정기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설비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 6 장 계약의 종료

#### 제 35 조 ( 계약의 해제·해지 )

- ① 계약자가 계약을 서비스 개통 전에 해제하거나, 개통 후에 해지하려는 경우 케이티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② 케이티는 서비스 별 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케이티는 별정통신사업자가 계약체결 후 제 8 조 제 4 항의 승낙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케이티는 제 2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케이티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 관련하여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2. 스팸 또는 불법스팸 관련하여 당해 연도에 2 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 3. 서비스 신청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 3 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 4. 케이티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제 36 조 ( 의견진술 )

- ① 케이티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10 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사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2 주일간 케이티에 게시함으로써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 ② 전항의 통지에 불구하고 계약자가 지정 일시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해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제 7 장 요 금

## 제 1 절 통 칙

### 제 37 조 ( 과금 거리의 산정 )

- ① 요금산정을 위한 거리(이하 “과금 거리”라 합니다)는 과금 기점 상호간의 직선거리로 합니다.
- ② 과금 거리의 단위는 킬로미터로 하며 1 킬로미터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 1 항의 과금기점 및 관할구역, 과금거리는 케이티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합니다.

### 제 38 조 ( 이용시간의 산정 )

-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발신인과 수신인이 통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부터 발신인이 통신이용의 종료신호를 한 때까지로 합니다.
- ② 서비스의 이용시간 중에 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제 39 조 ( 과금 주기의 산정 )

- ① 요금산정을 위한 과금 주기는 서비스 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분,시간,일,월,년을 단위로 합니다.
- ② 전항의 월 단위 요금은 이용기간이 1 월 미만인 경우 이용한 날짜수로 산정하며, 서비스 종료일은 이용한 날짜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 1 항의 연 단위 요금은 이용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 이용한 월수로

산정합니다.

#### 제 40 조 ( 요금의 계산 등 )

① 서비스 요금의 요율,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서비스 별 약관에 별도로 정합니다.

② 케이티는 천재지변과 기기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금 자료가 계속해서 24 시간 이상 기록되지 않았거나 또는 소멸되어 요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3 월분 요금 중 월별 최저일 평균액에 고장일수로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제 2 절 요금의 청구

#### 제 41 조 ( 요금의 납입청구 )

① 케이티는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 일전까지 요금 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하여야 합니다. 단 자동납부 고객에 대해서는 납입기일 5 일전까지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

② 케이티는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기간 중에는 월정액의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착신회선 중 하나만 이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케이티는 서비스 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이용휴지기간 또는 이용제한기간의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④ 케이티는 계약자 측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책임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배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가산금의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⑤ 케이티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별단위의 납입청구서를 1 장으로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용한 다른 서비스의 요금이나 체납요금 등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서비스 요금에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제 5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합 청구한 경우라 하더라도 요금이의 제기를 이유로 요금납입책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케이티는 해당서비스 요금을 분리하여 재청구해야 합니다

#### 제 42 조 ( 요금의 이의신청 )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 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케이티는 전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 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처리기간을 재지정하여 통지합니다.

#### 제 43 조 ( 납입청구의 소멸시효 )

요금의 납입청구권은 최초의 납기일로부터 6 월 이내에 납입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부당하게 면탈한 요금 또는 정산기간이 6 월 이상 소요되는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 3 절 요금의 납입

#### 제 44 조 ( 요금의 납입방법 )

-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서비스 별 약관이 정한 요금 등을 케이티가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케이티는 요금납입책임자가 금융기관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부터 케이티가 제공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정기납입요금의 1%를 할인한 금액으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별 이용약관에서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전항의 할인 적용 시 요금납부 책임자와 신용카드사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케이티가 청구한 정기납입요금을 카드사에서 케이티에 대납 후 익월 카드대금 결제 일에 본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 시행일 이후에 신규로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약정하는 고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 45 조 ( 요금납입책임자 )

- ① 요금의 납입책임은 계약자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다음 각호의 요금납입책임자는 1 차 납입의무를 지고 계약자는 2 차 납입의무를 집니다.
  - 1. 제 3 자 요금부담 또는 제 3 자 과금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의 요금납입책임자
  - 2. 제 44 조 제 2 항에 의하여 자동 납부하는 경우의 자동납부 약정자
  - 3. 계약자를 대위하여 케이티에 요금납부각서를 제출한 경우의 요금납부각서인

4. 서비스 별 약관에 의한 양도·승계신고 없이 타인명의의 서비스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서비스 이용자

5. 기타 서비스 별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경우의 요금납입책임자

③ 제 7 조 제 3 항에 의하여 케이티와 요금채권인수계약을 체결한 별정통신사업자는 그 요금에 대하여 납입책임을 집니다.

④ 본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계약자는 그 요금에 대한 납입책임이 없습니다.

#### 제 46 조 ( 요금의 납기일 )

① 요금의 납기일은 서비스 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케이티가 지정하며, 계약자는 지정된 납기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케이티와 계약을 체결한 별정통신사업자가 납입할 요금의 납기일은 납입청구서를 발행한 다음달 말일로 합니다.

#### 제 47 조 ( 단기이용예치금 )

① 케이티는 서비스의 단기이용계약자에게 요금납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예치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예치금은 단기서비스의 이용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반환합니다.

#### 제 48 조 ( 분납 또는 후납 )

케이티는 서비스 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납입책임자의 청구에 의하여 요금을 분납 또는 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 4 절 체납요금 등

##### 제 49 조 ( 체납요금의 징수 )

- ① 케이티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하여 최초납기일로부터 6 월 이내에 독촉 등의 납입최고를 못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천재지변 또는 계약자의 책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케이티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최초 납기월의 말일 다음날을 기준으로하여 요금체납액의 100 분의 2 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설비비, 시설비 및 장치비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제 50 조 ( 면탈요금의 징수 )

케이티는 계약자가 약관을 위반하여 요금을 면탈한 경우 그 면탈한 요금액의 2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 제 51 조 ( 요금의 반환 )

- ① 케이티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과납하거나 오납한 경우 그 요금을

반환하거나 차기 요금에서 정산합니다..

② 케이티는 제 41 조 제 3 항에 불구하고 케이티가 청구하여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납입한 경우 그 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 8 장 손해배상

### 제 52 조 ( 손해의 배상 )

① 케이티는 계약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 별 약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와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케이티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케이티가 인지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케이티에 통보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배상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 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 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⑤ 전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서비스 별 약관에서 별도 정한 경우 이외에는 계약자가 청구 받은 최근 3 월분 요금의 일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날짜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 배를 기준으로 계약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⑥ 전항의 손해배상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칙 (95.1.1 공시 제 1 호)

① ( 시행일 ) 이 약관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이 약관의 서비스 별 약관에 대한 적용은 이 약관 시행 후에 서비스 별 약관이 변경되어 공시된 날로부터 개시됩니다.

② ( 계약의 승계 ) 이 약관의 시행 전에 서비스 별 약관에 따라 이미 행한 처분, 절차, 결정, 공시 및 계약자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이 약관과 해당 서비스 별 약관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③ ( 체납요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 체납요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는 시행일을 별도로 공시합니다.

부 칙 (95.5.5 공시 제 20 호)

① ( 시행일 ) 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 ( 체납요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 체납요금에 대한 가산금부과는 95년 5월의 요금납입 청구분부터 모든 서비스 별 약관에 적용합니다.

부 칙 (96.5.31 공시 제 17 호)

이 약관은 96년 6월 요금납입 청구분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96.11.30 공시 제 38 호)

① ( 시행일 ) 이 약관은 1996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 가산금 미부과 적용 ) 납입청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요금에 대한 가산금 전액 미 부과는 '96 년 12 월 요금납입 청구분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97.1.3 공시 제 1 호)

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97.10.1 공시 제 34 호)

① ( 시행일 ) 이 약관은 1997 년 10 월 1 일부터 모든 서비스 별 약관에 적용합니다.

② ( 기산일 ) 이 약관 시행 전에 이용정지 또는 일시이용 중단된 경우의 요금미청구 기간 계산기준일과 정기요금을 6 월이내 납입 청구하지 못하여 납입청구권이 소멸되는 기준일은 1997 년 10 월 1 일로 합니다.

부 칙 (98.3.18 공시 제 7 호)

이 약관은 1998 년 3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98.6.10 공시 제 23 호)

이 약관은 199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99.7.23 공시 제 32 호)

① (시행일) 이 약관은 1999년 7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통신은 이 약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종전 약관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을 변경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정통신사업자가 계약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시까지 종전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199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0년 3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0년 9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1.3.31 공시 제 1 호)

이 약관은 2001 년 4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2.1.5 공시 제 1 호)

이 약관은 2002 년 1 월 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2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2.8.1 공시 제 13 호)

이 약관은 2002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2.9.1 공시 제 15 호)

이 약관은 2002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